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

##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olice Officer's Recognition to Domestic Violence

- Centering around wife abuse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박사수료 황 미 진\*\*

박사과정 송 기 춘\*\*\*

석 사 오 광 실

석 사 유 현 숙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 하 상 희

Dept. of in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Hwang, Mi-jin

Doctoral Course : Song, Ki-chun

Master : Oh, Kwang-sil

Master : Yu, Hyun-suk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

Adjunct Professor : Ha, Sang-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olice officers' perceptions and influential factors on their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participants of the present study were 226 police officers around Iksan province,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55.3% of the respondents had received training on domestic violence. Second, 64.6% of police officers had experienced cases of domestic violence, and 65.4% of them had chosen passive action in domestic violence situation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knowledge of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and the police officer's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ossible violence and the intervening attitudes of the police officers, and the police officers'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associated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f police officers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their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knowledge of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and the intervening attitudes of police officers were the next powerful predictors of police officers'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

▲주요어(Key Words) : 경찰(police-officer),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인식(Recognition)

---

\* 이 논문은 2010년도 익산 여성의 전화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황미진 (E-mail : jinsdestiny@hanmail.net)

\*\*\* 교신저자 : 송기춘 (E-mail : raphyskc@hanmail.net)

## 1. 서론

결혼기간 중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6가구 중 1가구이다. 또한 피살된 여성의 46%는 친밀한 이성파트너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이 가운데 73%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진 폭행이라는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의 통계로 보듯이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최선애, 2007; 오세연, 2009 재인용). 그러나 선진국에서조차도 가정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여성학자, 사회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정폭력을 사회 문제화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신용현, 2004).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정폭력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로, 가정 내의 문제로 간주되던 아동학대와 아내구타와 같은 가정 내의 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신혜섭, 2005).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나타내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가정폭력 신고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며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과,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찰의 인식과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즉각 개입, 사태진행을 장악하고 폭력을 제지하여 수사 활동을 펴야하며,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가정폭력특례법 제5조).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최초로 만나는 기관일 뿐 아니라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정춘숙, 2000). 가정폭력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희생자에 대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Thomas Green & Chandrika Kelso, 2010).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은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 정도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은 여성을 구타하는 폭력이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됨에도 가정 내의 사적문제로 잘못 인식하여 가급적 개입하지 않거나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김영란, 2007; 오민호, 2009). 즉, 현장근무 경찰관이 가진 가정폭력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경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 재량권은 제정된 법률이나 제도가 현실에 적용되고 정착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경찰관의 인식과 그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을 파악한 후 이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주명희, 2006).

그렇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없을 수가 없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이렇다 할 요인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개입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고찰결과, 다음과 같은 관련요인들을 추출할 수가 있다. 먼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경찰의 일반적 태도는 가정폭력을 '심각한 문제' 혹은 '가정문제'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허소영, 2001)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평등 의식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아내학대의 가해자,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학대에 대한 시각과 대응방식에 큰 영향을 주며 나아가 형사사건의 심리과정이나 관련법의 제정과정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의 가치관에 내재되어 아내학대 사건에 대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해결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는데(손정영, 1998), 즉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가정폭력의 인식 간에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관의 관점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는데(Breci, 1987; 허소영, 2001 재인용) 이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에 대한 입장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요인들 중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정폭력 방지법에 대한 지식,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의 인식 등을 고려하였다.

경찰은 아내폭력 문제를 사적인 문제에서 법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로 전환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된다(허남순, 장희숙, 김유순, 2000). 이는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나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경찰개입을 위해 필요하다(윤영아, 2005).

이렇듯,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경찰을 포함한 상담원 및 사회복지사, 의료계, 언론계 등의 종사자 간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하거나(박인선, 2000; 유민수, 2000; 황혜숙, 1998) 일반인과 아내폭

력 관련 기관 종사자의 인식과 태도 비교연구(손정영, 1998) 등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대응방안, 개입태도의 현황에 대한 연구(김병준, 2002; 김영란, 2007; 서거석, 김운희, 2002; 신용현, 2004; 오민호, 2009; 오세연, 2009; 윤영아, 2005; 주명희, 2006)에 머무는 등,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의 현장에 종사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인식과 관련하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정당하고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관련 요인들에 대한 개인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폭력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여성보다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40대 이상의 집단이 20-30대의 경찰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념의 왜곡된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졸과 대졸의 경찰이 대졸이상의 경찰보다, 또한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된 경찰이 20년 미만 된 경찰보다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윤영아, 2005). 경찰관의 근무연수는 가정폭력 사범의 체포율과 관련이 있는데, 냉소적인 경찰문화를 고려할 때, 경찰관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체포율이 낮아진다고 한다(Niederhoffer, 1967; 주명희, 2006 재인용). 또한 근무연한이 짧고 가정폭력을 다루어 본 경험이 적은 경찰관일수록 비난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무연한이 길고 가정폭력을 많이 다루어본 경찰관일수록公所유지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talans & Finns, 1995). 부부간 폭력경험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정적상관을 보였는데(허소영, 2001) 부부간의 폭력경험이 없을수록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정도가 낮았다. 이렇듯 경찰의 연령과 근무기간, 교육수준, 성별 등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는 결혼상태와 결혼생활 중 폭력경험 등 가족적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 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관련변인의 관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와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 그러나 몇 가지 선행연구를 통하여 관계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평등 의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이 적을수록 아내학대임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다고 나타난 연구결과(허소영, 2001)로 미루어 보아 성평등 의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에 대한 입장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의 관계는 주명희(2006)의 연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가정폭력 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경찰관이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6%가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대답의 예로 경찰관들은 '경찰관이 가정을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대다수의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도 잘 지낸다'며 가정폭력을 여전히 부부싸움으로 보는 시각을 보였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관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로 가정폭력을 경찰이 반드시 개입될 필요가 없는 가정사의 일로 볼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본 연구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중요하게 관련하다고 생각되는 폭력허용도, 가정폭력방지법 지식,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의 인식 등의 요인들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 III.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 관련변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가정폭력 관련변인들이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V.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근무하는 253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익산지역 파출소/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할 의사가 있는 경찰들에게 배포하였다. 무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27부를 제외하고 총 226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경찰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근무경력, 근무기관, 종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폭력경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중 폭력경험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했는가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 부부간 폭력경험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허소영, 2001)를 검증하고자 작성하였다. 이와같은 경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 2. 조사도구

###### 1)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경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경험의 척도는 주명희(2006)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지난 1년동안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를 질문하였고, 있다, 없다로 분석하고, 있는 경우 교육횟수에 대해 기입하게 하였으며 기입된 답변을 1-2회, 3회-10회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교육내용과 앞으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을 기입하게 만들어 추후 가정폭력 관련 교육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 2) 가정폭력 현장에의 출동경험

가정폭력 현장에의 출동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 문제로 직접 출동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출동횟수에 대한 질문에 없다와 2회 간격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출동했을 시에 대한 개입태도도 측정하게 하였다. 출동했을 시의 개입태도는 허소영(2000)의 최근 경험한 가정폭력사건에서 남편에 대한 조치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남편에게 충고하여 화해하도록 타이름, 가해자에게 다음번엔 체포될 것을 경고함, 소란행위 등으로 스티커를 발부함, 경찰서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함, 가해자 부재로 만나지 못함으로 구분하였다.

###### 3) 성평등의식

한국여성개발원(1999)의 척도와 박인선(2000)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윤영아(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말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을 측정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성평등의식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9 였다.

###### 4) 폭력허용도

스트라우스(1979)가 개발한 폭력 8등급 척도를 기준으로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언어적 폭력을 추가한 척도(윤영아, 2005) 8문항을 사용하였다. 폭력 허용에 대해 응답자가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있을 수 없다(1점)'에서 '매우 있을 수 있다(4점)'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평균을 측정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폭력허용도에 대한 신뢰도 측정 결과는 Cronbach's  $\alpha$  .95 였다.

###### 5) 가정폭력방지법 지식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법 지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여성의 전화(2003)의 자료집을 참고로 하여 윤영아(2005)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3문항),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내용(2문항), 가해자 처벌 및 범죄 수사에 대한 내용(3문항) 등 총 8문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211(93.3)	교육수준	고졸	58(25.7)
	여	15(6.7)		대졸이상	168(74.3)
연령	30대	47(20.8)	근무경력	10년미만	36(15.9)
	40대	135(59.7)		10~20년	123(54.4)
	50대	44(19.5)		20년이상	67(29.6)
결혼상태	미혼	7(3.1)	근무기관	파출소/지구대	150(66.4)
	기혼	219(96.9)		경찰서	76(33.6)
폭력경험	유	41(17.4)	종교	유	114(50.4)
	무	185(82.6)		부	112(49.6)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의 경우 1점, 오답의 경우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방지법 지식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6)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개입(범죄성)에 대한 입장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개입에 대한 입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남순(2000), 박미숙(2000), Brecci와 Simons(1987) 등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허소영(2000)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반대(1점)에서 동의(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이 개입해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3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1 이었다.

7)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인식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인식은 권진숙과 전석균(2001), 신보미(2005), 이서원(2003)의 가정폭력 당사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총 6문항을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긍정적인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측정은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 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 8)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폭력인 아내폭력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판별할 수 있는 인식정도(윤영아, 2005)로 정의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Walker(1979)의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myth)과 Ewing과 Aubrey(1987)의 연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손정영(2000)의 척도를 참고한 윤영아(2005)의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총 20개 문항으로 아내폭력에 대한 개입태도를 알아보는 사례에 대하여 각 문항에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은 예에 대한 응답에 0점, 아니오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정도가 낮고, 아내폭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측정문항의 일부를 제시한다면 "남편이 폭력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아내가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어느정도 피학증(맞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등이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alpha$  .77 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6.0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고 사후 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과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 1) 가정폭력 교육참여 유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 교육참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에 125명(55.3%)의 경찰이 받은 적이 있고, 101명(44.7%)의 경찰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83.8%(허소영, 2001)와 58.9%(윤영아, 2005)의 경찰이 교육경험이 있다고 한 이전의 연구에 비해서 낮은 수치로 볼 수 있겠다.

교육을 받은 경우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90명(72%)이 1~2회, 35명(28%)이 3~10회를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교육 받은 내용으로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가정폭력 관련법, 경찰관 수사요령, 관련시설 기관정보, 가정폭력 가해자 심리 및 특징, 가정폭력 피해자 후유증 및 특징, 위기상황 대처법, 피해자 상담기술 순으로 받았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희망하

\*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문헌에서는 가정폭력, 가족폭력, 아내구타, 구타당하는 아내, 학대당하는 아내, 학대당하는 부인, 때 맞는 아내, 아내학대, 아내폭행, 부부폭력, 배우자 학대, 가부장적 테러리즘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김병준, 2002; 정희진, 2001)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폭력, 아내구타라는 용어 등이 큰 차이 없이 쓰여지고 있다(윤영아, 2005).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나타내는 정도에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척도'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lt;표 2&gt; 가정폭력 교육참여 유무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교육 경험	유	125(55.3)	교육 횟수	1~2회	90(72)
	무	101(44.7)		3~10회	35(28)
교육 내용 (중복 기입)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60(26)	희망 교육 내용 (중복 기입)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교육	7( 2)
	가정폭력 피해자 후유증 및 특징	21( 9)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 및 특성	71(18)
	가정폭력 가해자 심리 및 특징	24(10)		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39(10)
	가정폭력 관련법	39(17)		가정폭력 관련법	32( 8)
	경찰관 수사요령	31(13)		가정폭력 예방 및 홍보에 관한 교육	44(11)
	관련시설 기관정보	27(11)		경찰관 수사요령	61(15)
	피해자 상담기술	15( 6)		관련시설 기관정보	38(10)
	위기상황 대처법	18( 8)		피해자 상담기술	54(14)
				위기상황 대처방법	50(13)

&lt;표 3&gt; 가정폭력 출동 경험

변인		구분	N(%)
출동횟수		없다	80(35.4)
		1 - 2회	49(21.7)
		3 - 4회	40(17.7)
		5 - 6회	14(6.2)
		7회이상	43(19)
가해자에 대한 조치	소극적대응	가해자에게 충고하여 화해하도록 타일렀다 가해자에게 다음번엔 체포될 것을 경고하였다 소란행위 등으로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71(40) 44(25) 1(0.4)
	적극적대응	경찰서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57(32)
	가해자 만나지 못함	가해자 부재로 만나지 못하였다	5(2.6)

&lt;표 4&gt; 가정폭력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M(SD)	Min	Max
성평등의식	2.42(.40)	1.00	4.00
폭력허용도	1.22(.53)	1.00	4.00
가정폭력방지법 지식	6.00(1.29)	1.00	8.00
경찰개입입장	2.36(.93)	1.00	5.00
당사자에 대한 상담 인식	4.13(.66)	1.00	5.00
가정폭력인식	11.93(3.90)	0.00	20.00

는 교육내용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 및 특성, 경찰관 수사요령, 피해자 상담기술, 위기상황 대처법, 가정폭력 예방 및 홍보에 관한 교육,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관련시설 기관정보, 가정폭력 관련법, 그리고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 2) 가정폭력 출동 경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험이 있었는가하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한 경찰이 80명(35.4%), 1~2회 출동경험이 있는 사람은 49명(21.7%), 3~4회 출동은 40명(17.7%), 5~6회 출동은 14명(6.2%), 7회 이상 출동경험이 있는 경찰은 43명(19%)이었다.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했을 때의 대처방안은 116명(65.4%)의 경찰이

가해자에게 충고 및 화해하도록 타이름,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소극적 대응을 하였고 57명(32%)의 경찰이 경찰서나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5명(2.6%)의 경찰은 가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하였다고 나타났다.

## 3) 가정폭력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관련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성평등의식의 수준은 중간점수보다 조금 낮은 정도를 나타내었고 폭력허용도는 중간점수이하의 정도를 나타내어 부부갈등에 있어 폭력은 있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중간점수 10.00 보다는 높은 정도를 나타냈지만 약 12점에 그쳐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 정도가 낮고, 가정폭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의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식은 평균이 약 6점으로 8문제 중 6문항을 맞춘 것으로 보아 가정폭력 방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가정폭력에 있어 경찰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경찰개입입장은 점수가 낮을수록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이 개입해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평균이하의 점수가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가정폭력 사건이 공권력이 개입될 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상당수의 경찰들이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당사자들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 관련변인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경찰의 성평등의식은 성별, 폭력 경험, 근무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자가, 그리고 부부갈등 시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이, 파출소/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이 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았다. 폭력허용도에 대하여는 성별과 근무기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가, 파출소/지구대에 근무하는 집단이 부부 갈등 시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찰의 개입입장과 관련한 변인으로는 결혼상태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미혼 집단이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이 개입해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인식에 관련하여서는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기대효과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근무기관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찰서에 근무하는 집단이 파출소/지구대에 근무하는 집단보다 가정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대하여는 30, 40대가 50대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낮았다. 성별, 결혼상태, 폭력경험, 근무기간,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졸과 대졸퇴의 경찰이 대졸이상의 경찰보다, 또한 근무경력이 20년 이상된 경찰이 20년 미만된 경찰보다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나타난 윤영아(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3. 가정폭력인식과 가정폭력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관련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의식과 가정폭력방지법 지식, 그리고 상담에 대한 인식과는 정적 상관을 폭력허용도와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방지법 지식을 많이 알수록,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높다고 생각할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는 정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구분	성평등 의식	폭력 허용도	가정폭력 방지법지식	경찰개입 입장	상담인식	가정폭력 인식
성별	남자	2.41(.40)	1.24(.55)	5.99	2.36(.94)	4.11(.67)	11.77(3.85)
	여자	2.60(.33)	1.00(.00)	6.13(1.30)	2.24(.75)	4.42(.39)	14.07(4.10)
	t값	-2.13*	6.38***	-.49(1.13)	.58	-2.85*	-2.10
결혼 상태	미혼	2.59(.44)	1.07(.19)	6.43(.98)	1.86(.47)	4.48(.39)	13.86(2.54)
	기혼	2.42(.39)	1.23(.54)	5.98(1.30)	2.37(.94)	4.12(.66)	11.87(3.92)
	t값	.99	-1.97	1.18	-2.75*	2.33	2.00
폭력 경험	있다	2.53(.28)	1.26(.39)	6.03(1.42)	2.29(.85)	4.15(.67)	12.21(3.74)
	없다	2.40(.41)	1.22(.56)	5.98(1.27)	2.37(.95)	4.12(.66)	11.82(3.93)
	t값	2.32*	.58	.17	-.53	.29	.57
근무 기관	파출소/지구대	2.37(.40)	1.30(.62)	5.97(1.29)	2.38(.96)	4.08(.74)	10.99(3.63)
	경찰서	2.53(.37)	1.08(.23)	6.05(1.31)	2.31(.88)	4.22(.45)	13.79(3.75)
	t값	-2.87**	3.90***	-.47	.57	-1.75	-5.33***
연령	30대	2.47(.41)	1.13(.32)	6.11(1.46)	2.38(.84)	4.11(.80)	12.04(4.01)b
	40대	2.43(.40)	1.24(.58)	6.07(1.23)	2.28(.91)	4.17(.60)	12.40(3.76)b
	50대	2.37(.38)	1.27(.56)	5.66(1.26)	2.57(1.05)	4.03(.66)	10.39(3.87)a
	F값	.75	1.01	1.89	1.63	.68	4.58*

\*p<.05 \*\*p<.01 \*\*\*p<.001

한 부부갈등 시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가정폭력은 경찰이 개입되어야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평등 의식과 폭력허용도, 성평등 의식과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식수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식수준과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과 상담에 대한 인식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폭력허용도와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 성평등의식과 상담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방지법의 지식수준과 상담에 대한 인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았다. 참고로,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가 .70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은 폭력경험으로 1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경찰들의 부부생활에서 폭력경험이 없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왜곡된 의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변인들과 함께 투입한 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폭력경험, 성평등의식, 가

<표 6> 가정폭력인식과 가정폭력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변인	성평등 의식	폭력 허용도	가정폭력 방지법지식	경찰개입 인식	상담에 대한 인식
폭력허용도	-.20**				
가정폭력 방지법지식	.10	-.23**			
경찰개입 인식	-.21**	.18**	-.20**		
상담에 대한 인식	.15*	-.13	.19**	-.25***	
가정폭력 인식	.39***	-.23***	.28***	-.29***	.19**

\*p<.05 \*\*p<.01 \*\*\*p<.001

<표 7>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Model 1		Model 2		
	B	β	B	β	
상수	12.59		3.55		
성별 <sup>a</sup>	-.21	-.01	-.20	-.01	
연령 <sup>b</sup>	-1.01	.57	-.84	-.14	
교육수준 <sup>c</sup>	-.55	.63	-.85	-.10	
결혼상태 <sup>d</sup>	-1.21	-.05	-.35	-.02	
폭력경험 <sup>e</sup>	2.93	.36***	2.52	.31***	
근무경력 <sup>f</sup>	.51	.09	.55	.09	
가정폭력 교육경험 <sup>g</sup>	.60	.52	.46	.06	
가정폭력 출동경험 <sup>h</sup>	.02	.01	.09	.03	
성평등의식			2.64	.27***	
폭력허용도			-.40	-.06	
가정폭력방지법 지식			.63	.21**	
경찰개입 인식			-.69	-.16**	
상담에 대한 인식			.04	.01	
F-Value	4.24***		7.40***		
R2	.14		.33		
▷R2			.19		
Durbin-Watson			1.75		

\*\*p<.01 \*\*\*p<.001

\* a : 성별 : 남자=0·여자=1, b : 연령 : 30대=0·40대=1·50대=2

c : 교육수준 : 고졸=0·대졸이상=1, d : 결혼상태 : 미혼=0·기혼=1

e : 폭력경험 : 유=0·무=1, f : 근무경력 : 10년 미만=0·10-20년=1·20년 이상=2

g : 가정폭력 교육경험 : 유=0·무=1, h : 무=0·1-2회=1·3-4회=2·5-6회=3·7회 이상=4



정폭력방지법 지식수준,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그 설명력은 33%로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만 투입한 결과에 비해 그 설명력이 19%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부부갈등 발생 시 폭력경험이 없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할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근무경험, 가정폭력 교육경험, 가정폭력 현장 출동경험, 폭력허용도, 상담에 대한 인식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논의 및 제언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에 기반한 논의 및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경찰은 125명(55.3%)으로 이전의 연구(윤영아, 2005; 허소영, 2001)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반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교육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고 사료된다. 이전에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며, 교육의 횟수를 정하고, 보수교육까지 제도화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받은 가정폭력 교육내용과 향후 희망하는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그동안의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이 가정폭력의 현황과 관련법 등 이론 중심적이어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행해지는 가정폭력 교육은 가정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교육이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정폭력 출동경험에 대한 질문에 64.6%의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 중 65.4%의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들이 여전히 가정폭력에 대해 범죄가 아닌 남의 집안일, 가족문제라고 생각하여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을 여느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인식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가정폭력과 관련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약간 낮은 수준의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폭력 허용도는 평균이하의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평균보다는 높은 정도를 나타내었다. 경찰의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가정폭력에 있어 경찰개입은 가정폭력 사건이 공권력이 개입될 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상담의 인식정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상담과 관련한 결과는 향후 가정폭력 교육내용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 및 특성과 피해자 상담기술을 희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사건현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경찰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건을 예방하는데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이러한 상담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근무기관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근무기관과 연령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파출소/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연령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근무기관에 따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 연령에 따른 차이라고 통합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는다는 선행연구결과(윤영아, 2005)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는 가부장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가부장제는 아내폭력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성난실, 2007).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부장적 가족가치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는데(김희연, 2005) 결국 연령이 높을수록 가부장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관점 또한 왜곡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섯째,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가정폭력과 관련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방지법 지식을 많이 알수록,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높다고 생각할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는 정도가 낮았다. 그리고 부부갈등 시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가정폭력은 경찰이 개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폭력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인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에 대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할수록 가정폭력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하여야 하나 경찰이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정서적인 안정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하여 향후 범죄예방을 위한 충분한 자기고찰을 수행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으로 안내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부부갈등 발생 시 폭력경험이 없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할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근무경험, 가정폭력 교육경험, 가정폭력 현장 출동경험, 폭력허용도, 상담에 대한 인식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력경험에 대한 결과는 아내학대의 정도인식에 대하여 부부간 폭력경험이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허소영(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구자 자체도 의외의 결과이고 폭력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정도나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응답자의 응답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면서 결과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선행연구 결과와의 논의자체가 비논리적이라 할 수 있겠다.

가정폭력 교육경험과 관련한 결과는 윤영아(2005)와 허소영(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가정폭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경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경찰관들의 40%정도가 받지 못했고 받은 인원 중 70%정도가 교육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해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주명희(2006)의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며, 향후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교육에 현장경험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내용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구성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오민호, 2009).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할 경찰들이 이 법의 취지

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표창원,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인식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찰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의와 중요성을 가지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리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인정하고 좀 더 발전된 연구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익산지역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후속연구에는 다양한 지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해 지역 간 차이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둘째, 경찰이 지각하는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인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요인이 종속변인이고 독립변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연구 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상담이나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생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바, 향후 가정폭력 당사자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관련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셋째, 최근에는 매 맞는 남편이 늘어가고 있으며 다른 폭력범죄에서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가정폭력범죄를 육체적으로 힘이 우월한 남편이 약한 아내를 때리는 신체적 우열의 문제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김병준, 2000), 본 연구는 아내구타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음 연구는 남편학대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의 교육경험 조사도구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희망하는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경찰들에게만 응답하도록 하여 이후의 교육과정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김병준(200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4), 223-245.  
 김영란(2007).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하여 -

-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6, 97-100.
- 김희연(2005).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대전시 인구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 연구보고서.
- 박인선(2000). 가정폭력 예방전략 개발.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은행프로젝트 자료집, 49-61.
- 서거석·김운희(200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14(1), 75-104.
- 성난실(2007). 아내폭력에 관한 여성주의 목회상담의 프로그램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정영(1998). 아내학대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보미(2005).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 행위자 및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안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용현(200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해섭(2005). 교사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개입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0, 112-124.
- 오민호(2009).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세연(2009).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민수(2000). 성장기 부부폭력 관찰경험, 성역할 인식,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정도가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에 미치는 영향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아(2005).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및 개입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춘숙(2000).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찰연계 현황 및 수사상 유의점. *한국성폭력상담소*, (1), 133-139.
- 정희진(2001).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 하나의 문화.
- 주명희(2006).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체포강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여성연구*, 5-42.
- 표창원(2001).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 영국 사례의 검토를 통한 경찰상의 개선책을 중심으로 -. *한국성폭력상담소*, (1), 69-93.
- 허소영(200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장희숙·김유순(2000).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태도 및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300-324.
- 허소영·허남순(2003). 경찰관의 가정폭력개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 103-123.
- 황혜숙(1997). 아내구타 문제에 대한 태도조사를 기초로 한 사회사업가의 역할.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talans, L. J., and Finns, M. A.(1995). How novice and experienced officers interpret wife assaults: Normative and efficiency frames, *Law and Society Review*, 29(2), 287-321.
- Thomas Green and Chandrika Kelso(2010). Police Discretion in Domestic Violence incident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14), 24-44.

접수일 : 2010년 09월 15일

심사일 : 2010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22일